

# 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6.03.0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하, 규정)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의거,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규정 제9조의2에 따른 재임용 심사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평가”란 규정 제9조의2 ②항 4호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로서,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 “Accepted 논문”이란 학술지의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으로, 최종 편집·조판 전 상태의 논문을 말하며, 게재 승인 논문, 채택(승인) 논문, 저자 최종본(accepted manuscript), 게재승인 원고를 포함한다.
3. “온라인 선게재 논문(Online Publish 논문)”이란 DOI가 부여되어 온라인에 우선 공개된 논문으로 권, 호, 쪽수가 확정되지 않은 “온라인 퍼스트(Online First)” 논문을 포함한다.
4. “최종 게재 논문(Final Publish 논문)”이란 권, 호, 쪽수가 확정되고 학술지의 정식 포맷으로 출판된 버전의 논문을 말하며, 정식 게재본 또는 최종 출판본(Version of Record, VoR)을 말한다.

제4조(외부평가위원의 선정) ① 학과장은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4항에 따른 외부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3인을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재임용 대상자의 전공 또는 인접 학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교육·연구 또는 산업계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의 전임교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3. 재임용 대상자의 인사·평가 등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자

제5조(업적 산정기간) ①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업적 산정기간은 규정 제9조의2에서 정한 현 임용기간으로 한다.

- ②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는 교육, 연구, 봉사 업적은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 4개월 전까지 확정된 실적을 원칙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9조의2 제2항 각호의 성격을 고려하여 업적 산정 기준 시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1호(책임강의 시간):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학기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2.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2호(강의평가): 임용기간 종료 직전 학기까지의 실적을 산정 대상으로 한다.
  - 3.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4호(연구실적):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 4개월 이후에 확정 또는 제출된 실적이라 하더라도, 학과인사위원회 심의일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기간의 연구실적으로 보아 이번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학술논문 등 연구실적의 경우, 게재 승인 논문(Accepted)이 논문 게재 승인서, 학술지 온라인 공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임용 심사에 포함할 수 있다.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로 제출된 연구실적에 대해 심사 반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실적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번 재임용 심사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반영하기로 결정한 연구실적은 차기 재임용 심사에서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다. 또한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제출된 연구실적이라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제3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기준 4개월 이후에 확정 또는 제출되어 학과인사위원회 심의 당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번 재임용 심사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실적은, 차기 재임용 심사에서 1회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⑥ 저널 및 학회지의 IF(impact factor)는 논문이 게재된 연도의 공식 IF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선게재 논문(online first)과 최종 게재 논문의 발간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 게재된 논문의 기준으로 한다.

제6조(외부평가 실시) ① 학과장은 재임용 대상 교원이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공학분야는 산업계 인사 포함 가능) 3명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 ② 외부 전문가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적의 우수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B 또는 C등급으로 평가하고, 각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균 B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연구실적만 재임용 심사 시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JCR 기준 상위 25% 이내(게재 연도 기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의 학문적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재임용 심사 시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재임용 기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 제9조의 2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재임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재임용 심사 마지막 학기 폐강으로 책임강의 시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1호
2. 강의평가 평균이 하위 20% 미만인 경우라도 수강인원, 학과 여건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청원하는 경우: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2호
3. 연구실 화재 등으로 연구활동 수행이 어려운 연구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연구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4호
4.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휴직기간에 한하여 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 부 칙

이 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